신안산대학교	대학구조개혁 규정	규 정 번 호	2-1-19
		제 정 일 자	2015. 3. 1.
		개 정 일 자	2024.3.20.
		책임부서/팀·계	기획처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내외적 교육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, 종합적인 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조직, 운영 등 신안산대학교의 구조개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 <2021.02.26. 개정>

제2조(대상 및 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의 전체 학과 및 행정부서를 대상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 <2021.02.26. 개정>

② 구조개혁은 학과 및 행정부서의 신설, 통합, 폐과(지), 명칭 변경, 정원조정, 소속교원의 전공전환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. <2021.02.26. 개정>

제3조(용어정의) "구조개혁"이라 함은 학과 및 행정부서의 신설, 통합, 폐과(지), 명칭 변경, 정원조정, 소속교원의 전공전환 등 대학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일들을 말한다. <2021.02.26. 개정>

제4조(구조개혁 기본계획) ① 구조개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조개혁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구조개혁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구조개혁의 목표
2. 구조개혁의 추진방안
3. 그 밖에 구조개혁 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

③ <2021.02.26. 삭제>

제2장 대학구조개혁위원회

제5조(구성) ①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둔다. <2019.3.4. 개정> <2020.3.12. 개정> <2021.02.26. 개정>

②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및 직원 1인 이상(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신안산대학교 지부의 조합원), 학생대표 2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. <2021.02.26. 개정>

③ 기획처장, 교무처장, 대외협력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 <2021.02.26. 개정> <2021.08.20.개정> <2023. 3. 30. 개정> <2024.3.20. 개정>

④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, 간사는 기획처 직원으로 한다. <2021.02.26. 개정> <2021.08.20.개정>

제6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② 당연직의 경우 보직변경으로 인해 위원 변경이 발생 시 임명일자를 기준으로 변경한다.

제7조(기능)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. <2021.02.26. 개정>

1. 구조개혁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<2021.02.26. 개정>
2. 구조개혁 평가(기준)방법에 관한 사항 <2021.02.26. 개정>
3. <2021.02.26. 삭제>
4. 기타 구조개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 <2021.02.26. 개정>

②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참고인을 선임, 참석 시킬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 <2021.02.26. 개정>

제3장 구조개혁 실행 및 절차

<2021.02.26. 개정>

제9조(구조개혁의 원칙) 구조개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행한다.

1. 정부 구조개혁 방침 등 외부환경 변화가 발생할 경우
2. 대학 경영상황, 새로운 발전 전략 수립에 따른 변화가 필요한 경우
3. 구조개혁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학과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<2021.02.26. 개정>

제10조(구조개혁의 시기 및 절차) ① 기획처는 구조개혁을 위한 절차와 내용에 관한 계획안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 <2021.08.20.개정>

② 구조개혁 절차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도록 한다.

③ 구조개혁은 학과의 요청 또는 대학발전계획에 의거하여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및 교무위원회 의결,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이사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. 단, 구조개혁(안) 수립을 위해 별도의 TF팀을 운영할 수 있다.

<2021.02.26. 개정>

제11조(평가방법) ① 학과 구조개혁평가는 정량평가(100점)로 하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입생충원율, 취업률, 중도탈락률 등 학과평가 점수로 평가하되, 각 지표별 배점은 정부의 정책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반영하여 총장이 정한다.
2. 최근 3년간 지표값에 대하여 평가하며, 당해 학년도 50%, 직전 학년도 30%, 전전 학년도 20%의 가중치를 적용한다.

② 학과의 운영이 현저히 부실하여 관리·감독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구조개혁 대상학과로 선정할 수 있다.

③ 행정부서 구조개혁평가는 제9조 2호에 따르며 별도의 평가는 시행하지 아니한다.

<2021.02.26. 개정>

제12조(학과 정원조정 및 명칭 변경) ① 학과 정원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한다. <2023.6.23. 개정>

1. 신입생충원율이 95% 이하인 경우
2. 정원내 재학생충원율이 정부의 정책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
3. 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 30%에 해당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감원인원은 평가 상위 학과나 향후 학과 발전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존학과나 신설되는 학과에 배정할 수 있다.

③ 학과 명칭변경은 학과의 요구 또는 구조개혁 방침에 따라 학과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<2021.02.26. 개정>

제12조의2(학과 통폐합 선정기준) 통폐합 대상 학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한다. <2023.6.23. 개정>

1. 제11조의 구조개혁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5%인 학과
2. 정원내 신입생충원율이 80% 미만 또는 정원내 재학생충원율이 80% 미만인 학과
3. 최소 정원 35명 이하인 학과의 경우 신입생충원율 90% 미만인 학과

<2021.02.26. 신설>

제13조(통폐합된 학과에 대한 조치) ① 통폐합이 된 결정된 학과의 전임교원은 다른 학과로 소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학과의 통폐합으로 인해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공전환 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원 전공전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③ 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이나 교육 요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, 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, 폐과면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<2023. 2. 23. 개정>

④ 통폐합된 학과의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학교법인 순효학원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
⑤ 통폐합된 학과의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전과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교육과 졸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<2021.02.26. 개정>

제4장 보 칙

제14조(비밀유지) 위원회의 위원은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. <2021.02.26. 개정>

제15조(평가예외) 편제완성연도 미도래 학년도에 해당하는 학과 및 졸업생 2회 이상 미배출 학과는 평가에서 예외로 한다. <2021.02.26. 개정>

제16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3. 2. 2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3. 3. 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3. 6. 26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